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98

발의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이형석·송갑석·민형배

이용빈・양향자・백혜련

이병훈 · 이학영 · 조오섭

윤영덕 • 이해식 • 오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격리자등에 한하여 선거일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 종료 후인 오후 6시 3 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격리자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표소 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없이 안전한 투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러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 일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기 때문에 격리자등과 다른 투표자들의 투표시간이 서로 중첩되고 동선도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궐선 거등의 격리자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격리자등의 투표소투표 종료 시각에 맞추어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도착이나 우편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시간 등을 조정하여 개표 시간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

요성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타 선거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자등의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전투표·거소투표·우편투표 등의 접수 마감 및 개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원활한 투표·개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6시"는 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생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 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 -----오후 6시 30분(보 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 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 30분)에 닫으며,----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 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 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교 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 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 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 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 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투표소 또는 시	-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기	거등에 있어서
는 투표소에서 오	.후 8시) 전에
<u>도</u>	
⑦	
	<u>"선거일</u>
오후 6시"는 각기	<u> "선거일 오</u>
후 7시 30분"으로	보, "오후 8시"
는 각각 "오후 97	시 30분"으로-